

합 병 보 고 공 고

주식회사 다이트랩(이하 “갑”)과 주식회사 다이트(이하 “을”)는 상법 제527조의3 및 제522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“갑”은 “을”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“을”은 해산할 것을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상법 소정의 합병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결의와 이 공고로서 합병보고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.

- 다 음 -

1. 합병계약 체결일 : 2025년 02월 10일
2. 합병승인 이사회 : 2025년 02월 26일
3.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 : 2025년 02월 27일 ~ 2025년 03월 27일
4. 합병기일 : 2025년 03월 28일

2025년 03월 31일

“갑” : 주식회사 다이트랩

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803, 지하1층 101호(신사동)

대표이사 김용현

“을” : 주식회사 다이트

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21, 지하2층, 2층, 3층, 5층

(신사동, 와이케이타워)

사내이사 조성미